

제276회 정례회
2008. 12. 15.(월)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회 운 영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검 토 보 고 서

- 충청북도의회 의원직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발 의 자 : 최광옥 의원 외 7명

2. 발의일자 및 상정일자

○ 발의일자 : 2008년 12월 8일

○ 상정일자 : 제276회 정례회

2008년 12월 15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3.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2009년도 충청북도의회 의원 의정비 이 내에서 월정수당을 조정하고 원격지 거주 의원이 회기중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는 경우 여비지급 기준 신설

4. 주요내용

가. 월정수당 조정

- 월 2,360,000원에서 월 2,640,000원으로 조정(안 제3조)

나. 원격지 회의출석 여비 신설

- 원격지(육로 편도 60킬로미터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의원이 회기 중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비 지급 기준 신설 (안 제7조)

다. 적용시기 :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

5. 검토의견

- 금번 충청북도의회 의원의회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월정수당을 월 2,360,000원에서 월 2,640,000원으로 조정하고 원격지에 거주하는 의원이 회기 중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는 경우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며
- 제3조의 월정수당과 제7조의 원격지 회의출석여비 개정규정을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한 것은 금번 조정된 의정비가 2009년 1월분 부터 적용되어야 하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붙임 : 충청북도의회 의원의회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역아동센터 발전 방안모색 -충북지역아동센터 지원책 마련을 위한 조례제정-

I. 머리말

2004년 아동복지법의 개정으로¹⁾ 그 동안 지역사회의 민간영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어 오던 공부방 등이 지역아동센터로 통합되어 아동복지시설의 하나로 운영되고 있다.²⁾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가정과 지역사회 내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던 빈곤아동들의 건전한 성장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빈곤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그들의 부모인 빈곤가족이 자활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필요성과 의미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³⁾ 이러한 기대는 정부조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⁴⁾ 지역아동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프로그램에 대한 아동의 만족도가 높고, 심리정서상의 우울·불안 그리고 비행행동 등이 감소되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실제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방과후 교육에 관한 법체계의 혼란과 미비 그리고 시행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인식부족으로 인해 지역아동센터의 현실은 매우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즉 방과후 보육과 관련한 근거법이 여성발전기본법, 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청소년위원회법 그리고 아동복지법으로 혼재되어 있어 유사한 사업임에도 주무부처가 다르고,⁵⁾ 이로 인하여 재정적·시설적 지원에서 차별과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또한 실질적으로 지역아동센터를 관장하고 지원하여야 하는 자치단체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인식수준이 매우 낮아 제도 본래의 취지를 실현하고 안정적으로 지원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조례를 갖추고 있지 않거나, 있다고 해도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⁶⁾ 이 때문에 전달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재정 및 프로그램 지원도 미비하거나 일관성이 결여된 상태이다.⁷⁾

물론 지금까지 지역아동센터들은 제한된 여건 속에서 지역내 빈곤, 결손, 방임 등 요보호 아동들을 위한 복지시설로써 그 소임을 다해 왔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역사회 아동을 위한 복지지원의 강화라고 하는 차원에서 지역아동센터는 단순한 교육프로그램과 급식제공 뿐만 아니라 사례관리, 가정지원서비스, 부모교육, 부모상담 및 지역자원연계 등의 종합적 사회복지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이제 지역아동센터는 기존의 민간비영리단체가 활동했던 공부방의 역할과 물리적 환경에서 벗어나 늘어나고 있는 빈곤·해체가정 아동의 다중위기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1) 2004.1.29, 법률 제7143호

2) 아동복지법 제16조 제1항 11호에서는 “지역아동센터 :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3) 강명순, 지역아동센터를 아십니까?, 빈곤아동을 위한 지역아동센터(공부방)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자료집, (사)부스러기나눔회, 2003, 12면.

4)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생활환경 및 인식조사(2007), 1-25면.

5) 예를 든다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유아시설에서는 12세 미만의 아동을 위한 방과 후 보육을 할 수 있고(동법 제27조), 청소년위원회에서 19세 이하 아동을 위한 방과 후 청소년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결국 학교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방과 후 학교, 방과 후 보육, 방과 후 청소년아카데미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의 이용아동이 서로 중복되고 있음에도 주무부처의 차이로 인해 지원내용이나 운영상황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6) 현재 지역아동센터에 관한 조례를 두고 있는 자치단체는 아산시 한 곳에 불과하며, 청주시 등 몇몇 자치단체에서 조례제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7) 차미예, 아동복지관련 조례분석, 숙명여대대학원 석사논문, 2003, 26-35면.

이를 위해서 현행법의 미비함을 보완하고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지역아동센터의 활성화를 실현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지역아동센터조례의 필요성에 주목하는 것이다. 물론 현재 몇몇 자치단체에서 지역아동센터운영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 있지만, 이들 조례안들이 지역사회의 구체적이고 다양한 욕구들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만들어진 그야말로 “살아있는 법으로서의 조례”인가에 대해서는 의심스럽다.⁸⁾

따라서 여기서는 사회적 실태 및 요구를 확인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충북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로 부터 도출된 과제를 바탕으로 지역아동센터 조례의 제정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지역아동센터의 의의

1. 지역아동센터의 개념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아동복지법 제16조 제1항 11호).

지역아동센터의 효시는 1960년대 이후 산업화로 인하여 생성된 빈민지역에서 자생적으로 운영되던 탁아방이 공부방으로 전환되면서 시작되었다. 그 후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면서 지역내 초등생과 중고생들을 위한 공부방 활동도 빈민지역에서 활발하게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1997년 말 외환위기 상황에서 저소득층 방과후 아동생활지도교사라는 이름으로 공공근로를 파견하고 급식비 지원을 함으로써 공부방들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⁹⁾ 그리고 2004년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전국의 공부방들이 지역아동센터로 통합되어 아동복지시설로서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과 보호아래 놓이게 되었다.

지역아동센터라는 다소 생소한 용어로 인해 다양한 개념논의가 있으나 이들을 종합해 보면,¹⁰⁾ 첫째, 빈곤지역에서 한부모가정 아동, 맞벌이가정 아동, 방임·방치되는 아동을 보호하고 신체적·정서적·문화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곳이다. 둘째, 아동의 생활교육과 가족지원사업뿐만 아니라 빈곤퇴치, 생존교육 등과 같은 빈곤지역의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체이다. 셋째, 빈곤지역 아동, 청소년 또는 그들의 가정이 사회적 보호망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빈곤현장의 정보와 자료를 확보하는 곳이다.¹¹⁾ 넷째, 지역사회의 생태체계적인 환경 안에서 아동을 중심으로 가족, 학교 및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다.¹²⁾

따라서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의 한 부분체계로서 지역사회 아동 및 그 가족의 욕구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의 각종 활동에 지역주민의 일원으로서 참여하거나, 센터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주민들을 참여시면서 지역사회와 교류하고 지방정부나 지역사회기관과의 관계 속에서 아동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종합적 기능을 수행하는 곳으로 이해할 수 있다.¹³⁾

2. 지역아동센터의 역할과 기능

8) 조례의 제정과정과 내용이 주민들의 요구와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사회적 실태 및 요구를 확인하고 조례(안)로 포섭하는 과정이 중요함에도 우리 지방자치의 현실은 이 단계가 무시되거나 소홀히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 이현석, 주민참여와 조례, 지방자치법연구, 제7권 4호, 2007.12, 233면 이하.

9) (사)부스럭기사랑나눔회, 지역아동센터 어제·오늘·내일, 2004. 23면.

10) 강명순, 앞의 발표문, 2003, 11면 ; 임봉련, 방과후 아동센터 실무자의 체험에서 본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에 관한연구, 경성대대학원 석사논문, 2007, 7면 ; 이태수, 현행아동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지역아동센터·공부방의 활성화를 중심으로, 빈곤아동을 위한 지역아동센터(공부방)법제화를 위한 공청회 자료집, (사)부스럭기사랑나눔회, 2003, 15-16면.

11) Morgan, K. J, Whose hand rocks the cradle?, The politics of child care, 2001. p.10.

12) 강명순, 위의 발표문, 2003, 11면.

13) 박혜영,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실태 및 활성화 방안연구,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008, 6-7면.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은 지역사회 내에서 교육, 정서, 보호, 급식, 문화 등 통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빈곤으로 충분한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는 아동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문화·교육적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다.¹⁴⁾

이처럼 지역아동센터는 방치된 아동들을 위한 교육공간으로서 단순한 방과 후 학습 중심의 공부방활동보다 더 넓은 의미와 기능을 지닌다.¹⁵⁾ 즉 지역아동센터는 빈곤아동을 포함한 지역 내 방과후 보육이 필요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행해왔던 기존의 방과후 보육서비스·학습지도뿐만 아니라 부모교육, 부모상담과 아동의 사례관리, 지역사회연계 및 자원봉사자 관리 등 한층 강화된 아동복지시설로 통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¹⁶⁾

3. 지역아동센터 현황

지역아동센터는 2008년 6월말 현재, 전국에 2,810개소가 운영중이며, 지역아동센터의 설립주체는 시민단체, 종교단체, 개인,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지방자치단체 등이다. 2006년 현재 국고 지원을 받는 센터는 전체의 47.2%이며, 국고 지원을 받지 못한 센터는 52.8%이다. 운영비는 개소 당 월220만원(급식비 등 미포함)으로 유사 복지시설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2007년 6월부터 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 전국 1,923개소에 2,700명의 아동복지교사를 파견하고 있으나, 단기 일자리 창출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의 전문 인력 확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기존 직원들과의 보수체계, 업무분장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기관과의 관계에서도 업무조정이 원활하지 않는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다.¹⁷⁾

III. 충북의 지역아동센터 현황 및 문제점

1. 실태조사

(1) 현 황

충청북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2005년 40개소, 2006년 43개소, 2007년 6월 현재, 118개소가 있다.¹⁸⁾ 이중 114개소는 정부의 예산지원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충청북도의 경우, 아동 수 대비 지역아동센터의 분포가 불균형적인 문제가 있다. 예를 든다면, 아동수가 9,675명인 옥천지역에는 2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는 것에 비해 아동수가 8,340명인 영동지역에서는 10개소가 운영되고 있다.¹⁹⁾ 이는 아동의 인원과 상관없이 신고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며, 이 때문에 지역아동센터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아동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4)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빈곤 가정 아동의 실태 및 지역아동센터 현황과 현안 문제에 대한 정책 제언, 2008, 10-20면.

15) 강명순, 위의 발표문, 2003, 10면.

16) 천효숙,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의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서강대대학원 석사논문, 2007, 2면.

17) 이러한 문제는 미국에서도 동일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America, N. Y : Child Welfare League of America. 1997, pp.12-18.

18) 충청북도는 아동복지 사업 중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 예산으로 2005년 396,000(천원), 2006년 936,000(천원), 2007년 2,052,000(천원)의 예산이 지역 내 아동보호를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책정되어 있으며, 아동복지교사 사회적일자리지원, 아동급식지원 사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역 내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19) 이밖에 청원군도 아동 수 30,767명에 지역아동센터 18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에 비해 전체아동 28,276명의 제천시 6개소만이 운영되고 있어 지역의 아동수와 지역현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설문조사²⁰⁾**(1) 조사 설계 및 진행**

2007년 6월 현재, 충청북도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총 118개소 지역아동센터 가운데 연구에 동의한 114개소의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직접 방문하여 센터장 및 교사, 아동과 보호자와의 의견수렴 및 설문지를 통한 자료수집방법을 통하여 조사실시하였다.

(2) 주요 조사내용**① 센터장 설문지**

센터의 운영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운영시간, 실무인력, 재정, 운영주체, 센터의 특성, 아동현황을 하위변인으로 구성하였으며, 지역네트워크를 파악하기 위해 주민인식, 연계기관, 후원단체, 교사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변인을 구성하였다.

② 교사설문지

교사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프로그램 운영, 교사회, 학부모 참여, 업무관련 교육, 교사의 자기개발, 교사자질, 평가방법을 하위변인으로 구성하였다. 만족도에는 환경에 대한 만족도, 교사의 직무만족도, 프로그램 만족도가 포함되었다.

③ 아동 및 보호자 설문지

보호자의 센터이용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센터이용의 이유, 센터 프로그램의 인지여부,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그 밖에 다양한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센터환경 만족도, 교사에 대한 만족도, 참여 만족도, 프로그램 만족도, 전체 만족도로 세분하여 살펴보았다.

(3) 분석방법

충북도내 114개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센터장용 1부, 교사용 2부, 아동용 20부, 보호자용 20부를 배포하여 수집하였다. 자료의 통계분석은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2. 조사결과**(1) 운영 현황**

지역아동센터의 일일평균 운영시간은 9시간이 30.1%로 가장 많았고, 10시간·11시간이 각 12.1%, 12시간도 6.0%를 차지해 83.2%의 시설에서 8시간 이상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 결과는 지역아동센터의 특성상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며, 동시에 종사자의 근무부담이 가중함을 알 수 있다.

20) 여기서는 지면의 한계로 인해 설문에 대한 응답내용과 분석결과를 최대한 요약하여 서술한다.

실무교사 인력은 2명이 39.8%, 3명 32.5%, 1명 15.7%로 나타났으며, 교사 1인당 담당하는 아동수는 1~10명이 46.4%, 11~20명 40.5%, 20명이상 13.1%로 나타나 개별적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자원봉사자가 없다고 응답한 시설이 45.1%를 차지하고, 조리사가 없다고 응답한 시설도 94.1%나 되기 때문에 부족한 인력을 실무교사나 센터장이 보충해야 하는 현실이다.

(2) 재정 현황

본 연구에 참여한 시설 중 94.1%는 정부 보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식비를 제외하고, 정부보조금을 포함한 연간운영비가 '3,00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시설이 59.5%로 가장 많았으며, '2,000만원 미만'의 시설도 13.1%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 정도의 재정상태로는 센터장·교사의 인건비는 물론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도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다.

(3) 아동 현황

일일평균 이용아동 수가 26~30명이 40.3%이었으며, 21~25명 19.5%, 36명이상 18.2%, 31~35명 13.0%로 비교적 많은 아동들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었다. 이들 아동의 학년은 초등학교생이 79.4%로 가장 많았으며, 중학생 11.9%, 고등학교생 1.9%, 미취학 아동도 6.8%가 이용하고 있었다. 이로서 연령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교실이나 교사가 부족한 현실에서 전문적인 프로그램 진행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사대상 아동들의 가족형태는 양친가족이 65.5%로 가장 많았고, 한부모가족과 위탁가족이 34.5%로 나타났다. 아동들이 친부모와 살지 않는 이유는 부모의 이혼이 29.6%로 가장 많았으며, '이유를 모른다'고 응답한 아동도 40.4%로 높게 나타났다.

그 밖에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대부분의 부모들이 맞벌이를 하고 있으며, 부모의 출퇴근 시간 전후에 아동의 지도감독이 소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교사의 일반적 현황

지역아동센터 교사의 성별은 여성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교사의 연령대가 30대에서 40대에 75.6%로 집중되어 있는 것과 관련지어 볼 때 사회에 재진출하고자 하는 여성들이 주로 선택하는 직종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교사의 직무만족도 관련 설문에서 교사의 업무량에 대한 응답이 대체로 불만족으로 집계되었다. 업무분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교사들은 아동의 교수-학습활동 및 학부모 상담, 행정 업무, 위생과 관련된 식생활 지도와 같은 업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고, 이러한 과중된 업무는 장기 근무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보수에 대해서 42.0%의 교사들이 불만족하다고 응답했으며, 만족 38.4%, 매우 불만족 12.7%, 매우 만족 6.9%로 집계되었다. 재정적 어려움에 따른 문제가 프로그램 운영뿐만 아니라 직무만족도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교사들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강한 자부심을 보였다. 만족 53.6%, 매우 만족 37.5%, 불만족 8.1%, 매우 불만족 0.8%로 집계된 결과를 보면 90.1%의 교사들이 매우 높은 자부심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프로그램 현황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는 응답이 97.8%에 이르러, 거의 모든 센터에서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었다. 또한 아동들에게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을 묻는 질문에서 학습지원프로그램이 41명(41%)으로 집계되었다.

학습지원 프로그램 다음으로 급식지원이 83.4%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와 아동의 설문 결과에 비추어 볼 때도 이 부분의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운 이유로는 재정적 어려움에 35.2%의 교사가 응답하였으며, 학부모의 관심 부족에 29.5%의 교사가 응답하였다.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느냐는 질문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교사가 37.6%, 프로그램에 따라 다르다고 응답한 교사가 52.4%로 집계되었다.

(6) 아동의 학교생활에 대한 전반적 특성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가운데 학교에서 친구로부터 따돌림의 경험이 있는 아동은 26%이며, ‘선생님께 차별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아동도 10.6%로 나타나 아동들의 자아존중감 향상 및 교우관계 개선 등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교 숙제나 준비물을 잘 챙기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아동이 41.8%로 나타나, 아동들의 학교적응을 위한 세심한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며, 가정과 학교(교사)와의 효과적인 연계 방안 모색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3. 충북지역아동센터의 문제점

이상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충북지역아동센터의 문제점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1) 운영비의 절대적 부족

충북의 지역아동센터는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등 비영리 법인,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및 개인 등이 운영하고 있으며 개소당 월 2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충청북도에서는 평가를 통해 120~240만원까지 차등 지급을 실시하여, 지원액이 낮은 시설에서는 운영비의 문제가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이러한 차등지원방식은 자칫 빈곤지역의 지역아동센터를 더욱 열악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비스 질의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지원금의 구성 비율은 중앙정부교부비 50%, 지방비 50%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급식비는 전액 지방비로 아동 일인당 하루에 3천원이 지급되고 있어, 방학 중에 2끼의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의 현실을 볼 때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그 외 부족한 재원은 종교단체나 기업체의 후원금이 있으나 고정적으로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재원의 대부분은 정부지원액과 급식비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2) 교사 인력확보 및 처우의 열악성

교사의 업무 만족도 결과에 비추어 보면, 많은 교사들이 과중한 업무량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지역아동센터 교사의 평균 임금은 72만원으로, 2008년 최저임금²¹⁾ 78만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농산어촌의 경우 평균임금이 55만원으로 지역적 편차가 크다.

이러한 교사에 대한 열악한 처우는 지역아동센터로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이 적은 것이 가장 큰 이유이겠지만, 지역아동센터의 입장에서는 법제화 이후 종사자 자격과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한편으로는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낮은 급여로 인해 인력 확보가 어려울 수밖에 없게 된다.

21) 2008년 최저임금은 2인 가족 기준 월 784,319원이다.

이처럼 교사의 개인적 품성과 사명감에 의존해서 현실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3) 지역자원 활용의 부족

지역아동센터의 재정적·운영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자원의 활용이 필요하다. 이는 지역아동센터가 교과수업 이외에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서 종합적인 아동복지시설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기능적 과제와도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이를 위해 지역기관과의 연계는 물론 자원봉사자의 발굴,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물적 지원기관의 연계와 교과담당 전문강사의 확보 등도 매우 중요한 자원 확보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지역자원의 연계망 구축은 개별 시설의 문제로 한정될 수밖에 없고, 이 때문에 시설운영상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기관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4) 센터운영시스템의 미비

지역아동센터 운영시간을 8시간으로 되어 있지만, 시설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비교적 많은 시설에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센터 운영상의 어려움과 교사의 업무과중이라는 문제를 동시에 유발하게 된다. 따라서 교사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지고 이와 맞물려 센터의 운영시간을 참여 아동의 학년에 따라 오후에 시작하여 야간보호까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고학년으로 구성된 시설에서는 운영시간을 15시~22시로 하는 등 지역과 아동의 특성에 따라 탄력적이고 현실적으로 운영시간을 조정하고, 야간운영으로 인해 지출될 수 있는 운영비를 별도 지원해 줌으로써 아동에게 필요한 시설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5) 교사의 전문성 부족

분석 결과에 의하면, 지역아동센터 교사들의 자기개발 욕구가 매우 높고, 특히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강한 욕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프로그램 개발이나 아동상담 연수 등 실질적인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교사들이 자신의 업무에 대한 높은 의욕을 나타냄과 동시에 업무에 필요한 능력과 자격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보다 질 높은 교육을 위해 교사들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보수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보수교육은 형식적이고 일시적인 교육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교육이 실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6) 시설 및 기자재 미비

센터환경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공간, 청결도와 같은 주어진 환경 안에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항목에 대한 불만족보다 소방기구 및 응급약품 등과 같은 안전기구 배치에 대한 요구가 높았으며, 그 밖에 아동발달이나 프로그램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놀이기구 및 학습도구 등에 대한 만족도가 타 항목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전문교사 인력의 확충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아동의 수와 학년배치에서 만족도가 다른 부분에 비해 떨어지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아동에 대한 보호에 있어 보다 질적인 접근을 원하는

부모 및 아동들의 욕구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질적인 부분을 높일 수 있는 시설 및 기자재에 대한 투자와 교사 수의 증원이 요구되고 있다.

(7) 아동보호와 지도감독 결여

조사대상 아동 가운데 조손가족, 친인척 가족 등 위탁가족의 아동이 34.5%로 나타나 가족 구조의 결손에 대한 아동 보호와 지지의 역할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 대부분의 부모들이 맞벌이를 하고 있고, 아동이 거의 매일 지역아동 센터를 이용하고 있다. 하교 이후에도 대부분의 시간을 지역아동센터에서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아동센터가 아동보호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지역아동센터가 문을 닫은 후에도 친구들과 놀기 위해 집에 가지 않고 있으며, 토요일 휴업일에도 친구들과 놀거나 집에서 텔레비전 시청이나 컴퓨터 게임 등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볼 때, 부모의 부재상황에 대한 관심과 아동에 대한 지도감독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IV. 지역아동센터 조례의 제정방향

1. 방과후 교육의 통합적 운영

우리나라 방과후 아동지도에 관한 근거법은 아동복지법, 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여성발전기본법 및 청소년보호법 등으로 혼재되어 있다.

즉 2000년, 여성부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방과후 보육교실이 국공립 및 민간보유시설에 설치되어 운영되어 오고 있으며, 2004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지역아동센터라는 명칭으로 아동복지시설로 편입되었고, 2006년에는 사교육비경감과 학교유휴시설 개방을 목적으로 방과후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²²⁾ 결과적으로 보건복지가족부는 지역아동센터를, 교육부는 방과후 학교를, 여성부는 방과후 보육교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중복적으로 관리·지원하고 있는 난맥상이 나타나고 있다.²³⁾

이 때문에 사업대상 아동의 확보문제, 종사인력수급의 문제, 프로그램운영과 관리문제, 소속기관 또는 기존시설과의 이해 갈등 문제 등이 해결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조례에서는 이러한 법체계상의 문제들을 극복하고 방과후 교육의 일관성있는 관리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방과후 교육에 관한 통합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사업의 일관성과 체계성을 확립하여 궁극적으로 종합적 아동복지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지역아동센터 개념 및 역할의 명시

아동복지법 제16조 제1항에서는 지역아동센터를 “지역사회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으나, 개념이나 역할이 구체화되지 못한 관계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이나 운영계획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의 개념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프로그램의 유형을 세분하여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²⁴⁾

22) 임봉련, 앞의 논문, 2007, 122면.

23) 현재 청소년위원회의 청소년아카데미 사업과 영유아보육시설 사업 주체는 보건복지가족부로 통합되었으나, 여전히 업무조정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과거와 같이 운영되고 있다.

24) 이경림, 지역아동센터를 준비하려면, 한국의 지역사회운동과 지역아동센터 공부방의 이해, (사)부스려기나눔회, 2007, 9면.

우선 지역아동센터의 개념 및 역할은 “(1) 빈곤지역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사회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하고 안전한 보호·양육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취약아동이 가정의 빈곤이나 맞벌이 등으로 적절한 보호를 받기 어려운 환경에서 이들에게 적절한 보호서비스와 학습지도를 함을 기본으로 하는 시설, (3) 지역사회 안에서 아동의 접근성이 일차적으로 가장 용이한 시설로 소규모로 운영되는 시설”임을 명시하여 지역아동센터가 종합적인 아동복지시설로서 기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지역아동센터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도 “(1) 보호프로그램 : 일반적 보호와 급식, (2) 교육프로그램 : 학습제공, (3) 건전한 놀이와 오락프로그램 : 문화체험 및 특별활동, (4) 가족기능강화 : 가정방문, 부모상담 및 부모교육, (5) 지역사회 연계 : 학교, 동사무소, 구청, 의료기관 및 타복지기관과 연계, (6) 아동권리 보호 : 아동과 가족의 생존·복지·문화·발달·학습권 등 권리보호를 위한 각종사업”²⁵⁾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3. 빈곤아동 실태조사 및 종합계획수립

조사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절대다수는 기초생활수급가정,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및 맞벌이가정의 자녀들이다. 즉 가정에서의 돌봄의 한계로 인해 사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빈곤아동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빈곤아동이란 성인빈곤이나 노인빈곤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보통 18세미만의 아동이 빈곤가족에 속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즉 아동빈곤은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의 빈곤과 직결되어 있는 빈곤의 아동화(Juvenilization of Poverty)구조에 놓이게 됨을 의미한다.²⁶⁾ 이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의 존재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지역아동센터가 없다면 빈곤아동은 방임상태에 놓이게 되고, 결국 빈곤의 세습화가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의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빈곤아동의 실태에 대해 지역차원에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지역아동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종합계획이 수립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조사대상은 18세 미만의 절대빈곤아동 뿐만 아니라 상대빈곤아동을 포괄하도록 하여야 한다.²⁷⁾ 우리나라는 경제성장과 공적부조 제도 등으로 인하여 절대빈곤은 상당히 완화되었지만, 사회양극화로 인한 불평등 심화는 구성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따라서 절대빈곤보다는 상대빈곤에 주목하여 빈곤 현상을 파악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아동빈곤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는데 더욱 적합하기 때문이다.

4. 지역별센터와 거점센터의 전달체계화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제공뿐만 아니라 보호자에 대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정서적 지지와 함께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연계 활동을 통해 다양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소규모의 영세한 개별 지역아동센터가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계망을 구축한

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지역의 개별적인 아동센터 기능과는 별도로 거점으로서의 지역사회

25) 임봉련, 앞의 논문, 2007, 120면

26) Korenman, S. Miller & Sjaasad, J., Long term Poverty and Child Development in the United State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Vol.17 No.2, 1995, pp.127-156.

27) 초등부 아동 이상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복지법 상 아동은 18세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이들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아동복지센터를 두어, 개별 지역아동센터의 관리와 프로그램 및 인력망을 구축하여 지원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²⁸⁾

시설의 규모면에서 보면 그룹홈이 가장 작은 개념이라고 본다면 “지역아동센터”는 중간규모로 아동이 위기·방임된 상태에서 가장 접근이 용이한 시설로 하고, 아동복지센터는 프로그램개발 및 연계망 구축 등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실시하는 규모의 시설로 나누어 체계를 정립하여 규정하는 방식이 적절할 것이다.²⁹⁾

5. 재정지원의 원칙 수립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주체는 개인과 종교단체, 그리고 지자체 등이지만, 대부분의 지역아동센터는 운영주체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부분지원을 받고 있을 뿐이다.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로 지원되는 국고 운영비로는 법정 종사자의 인건비에도 부족한 실정이며, 종사자의 전문성 확보와 다양한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통한 지역아동센터의 안정성을 구현하기는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지역아동센터의 안정화와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운영비 증액은 물론 종사자들의 인건비 현실화를 위한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³⁰⁾

따라서 조례에서 운영비지급의 원칙을 명시하고, 종사자의 인건비에 관한 최저선 및 초과수당 그리고 급여지급의 체계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문인력의 유입을 확대하고, 취약지역 교육의 질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6. 시설안전의무의 강화

현행 영유아보호법은 아동 전원에 대해 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하고, 영유아보육시설 설치시 1층에 위치해야 하며 2층인 경우 비상계단과 영유아용 미끄럼대를 설치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또한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³¹⁾

그러나 장애통합지역아동센터와 지역아동센터에 관해서 현행 법령상 이러한 안전의무 규정이 없어, 지역아동센터 내에서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해서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조례로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을 영유아보육시설에 준하도록 시설의 안정성 확보 의무를 강화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7. 인력망구축 책무

28) 입법적으로 아동복지법 제 16조 아동복지시설 안에 규정되어 있는 “아동복지관”과 차별성이 있는 “지역사회아동복지센터”를 새로이 신설하는 방안이 있으나, 조례를 통해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29) 일본의 경우, 아동복지법에서의 방과후 아동보육시설은 학동보육(저학년 아동보육을 의미함), 아동관(아동관이란 아동복지법에 의거한 아동후생시설로서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를 제공하여 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서함양을 목적으로, 1)소지역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소형아동관, 2)소형아동관 기능에 더하여 아동의 체력증진을 위한 특별지도기능을 하는 아동센터, 3)도도부현 또는 광역지역에서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대형아동관, 4) 그 외의 아동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 박향아, 일본의 아동보호프로그램(학동아동)에 관한 연구, 아동연구 제10권, 2007, 56면.

30) 자격기준 면에서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기준(아동복지법시행령13조)과 영유아보육시설의 시설장의 기준은 동일하며(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5조), 사업내용면에서도 영유아보육시설에서 방과후 아동지도를 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영유아보육시설의 1년 미만 시설장의 월평균급여는 1,450,000 원이며, 1년 미만의 보유교사는 1200,00수준인 반면에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장 및 실무자의 월평균급여는 50-60만원으로 저임금을 받고 있다.-중앙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 2005, <http://www.educare.or.kr>

31) 동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항 별표1.

지역아동센터를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역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지역아동센터가 상호보완적인 체계로 운영되는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생활복지사 및 자원봉사자의 인력정보망을 구축하여 교육참여는 물론이고 “대체교사”로 활용하도록 하고, 자원봉사자 인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시설에는 확보된 정보망을 통한 자원봉사자 파견을 실시함으로써 지역아동센터 직원들의 전문성 확보는 물론 직업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은 지역아동센터 차원이나 민간 차원에서는 불가능한 일임이 분명하며, 자치단체의 책무로 할 때만이 가능할 것이다.

8. 교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재교육

아동의 문제는 더 이상 아동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과 지역의 문제가 상호작용하며 연결되어 있다. 특히 아동의 경우는 내·외적 환경영향에 의해서 변화될 가능성을 많이 내포하고 있으며, 빈곤·방임 및 학대의 아동의 경우 더욱 그 변수가 크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이 때문에 지역아동센터 담당인력은 통합적이고 사회복지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에서 보았듯이 단순한 학습제공에서부터 급식, 교육, 특별활동, 아동상담, 부모상담, 기관운영 및 지역사회 자원의 연결 그리고 행정전달체계 등 공식·비공식체계와의 관계를 담당할 인력이 필요하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방과후 프로그램의 교사자격 취득에 있어서 영유아 보육교사 취득과는 다른 교육과정을 요구하고, 별도의 지위와 직무를 부여하고 있음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생각건대 방과 후 보육교사의 자질은 우리나라의 방과후 보육의 질적 수준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요인이 될 것이다. 특히 유능한 개인은 전문적 교육과 훈련을 바탕으로 네트워크를 발전시키고 내부역량을 강화하며, 조직내외간의 정보연계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³²⁾는 점에서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격 및 재교육의 제도화가 조제로 포섭될 필요가 있다.

9. 아동의 참여권보장

지역아동센터의 특성상 교사와 학부모·아동 사이의 활발한 의사소통과 참여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조례에서는 이점을 특히 강조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우선 아동인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아동들로 구성된 자치회를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아동들의 센터운영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며, 급식에 대한 아동의 욕구조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³³⁾ 이와 동시에 방과후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학부모의 인지도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게 나온다는 점에서 학부모의 참여 역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아동 및 학부모의 참여여부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지역아동센터 평가항목으로 규정하는 방식이 적절할 것이다.

V. 맺음말

지역아동센터의 양적인 확대는 필연적으로 질적 수준의 저하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또한 법적인 시설

32) Tushman, M. L. & T. J. Scanlan, Characteristics and External Orientations of Boundary Spanning Individual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Vol.24 No.1, 1981, pp.93-94

33) 박영양, 빈곤결식아동의 참여권보장을 위한 지역아동센터의 역할, 현대사회문화연구소, 2005.9.1, 28-31면.

자격과 기준만 갖추게 되면 운영이 가능하게 되면서 그동안 민간 비영리부문에서 지향해온 순수성과 노력들이 훼손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지역아동센터가 통합적인 아동복지의 관점과 지역사회실천의 관점을 가지고 지역사회 내에서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의 여부는 이제 지역아동센터 정책과 제도의 몫으로 남게 되었다.

그러나 방과후 보육과 관련된 우리의 법률들이 체계화되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의 직접적인 근거법인 아동복지법 역시 “요보호아동중심”의 사후적인 시설중심 복지서비스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아동센터의 본래 취지와 기능을 실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의 근거법이 이러한 취지에 맞도록 개정된다면 바람직하겠지만, 이에 이르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지역아동센터 사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서라도 달성된다면 아동복지정책의 상징적 의미를 담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지역아동센터조례의 내용에 주목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현재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아동센터조례를 제정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조례를 제정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조례가 주민의 요구를 실천적으로 반영하고 주민의 권익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적 실태 및 요구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분석·평가 작업이 면밀히 선행되어야 한다. 비록 이러한 작업은 형식적 절차이전에 행해지는 것이지만, 조례의 현실적합성과 타당성이라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따라서 앞으로 제정될 지역아동센터조례는 기존의 많은 조례들이 형각화되었던 오류를 되풀이를 하지 않고, 진정으로 살아 있는 법으로서의 조례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³⁴⁾

또한 이러한 조례에 대한 인식의 전환은 제도적으로 완비되지 못한 우리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내용을 보완하는데 기여할 것이고, 더 나아가 의원들의 자질과 행정의 불투명성에 가해지는 비판의 소리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행되고 있는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서 주민, 지방의회, 그리고 지방정부의 연대와 공동책임이라는 지방자치의 긍정적 이상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기여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명순, 지역아동센터를 아십니까?, 빈곤아동을 위한 지역아동센터(공부방)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자료집, (사)부스리기나눔회, 2003.
- 박영양, 빈곤결식아동의 참여권보장을 위한 지역아동센터의 역할, 현대사회문화연구소, 2005.9.1.
- 박향아, 일본의 아동보호프로그램(학동아동)에 관한 연구, 아동연구, 제10권, 2007.
- 이경림, 지역아동센터를 준비하려면, 한국의 지역사회운동과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이해, (사)부스리기나눔회, 2007.
- 이태수, 현행 아동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지역아동센터 공부방의 활성화를 중심으로, 빈곤아동을 위한 지역아동센터공부방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자료집, (사)부스리기사랑나눔회, 2003.
- 이현석, 주민참여와 조례, 지방자치법연구, 제7권 4호, 2007.12.
- 임봉련, 방과후 아동센터 실무자의 체험에서 본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에 관한연구, 경성대대학원 석사논문, 2007.
- 차미예, 아동복지관련 조례 분석, 숙명여대대학원 석사논문, 2003.
- 천효숙,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의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서강대대학원 석사논문, 2006.
-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생활환경 및 인식조사(2007).
- 부스리기사랑나눔회, 지역아동센터 어제·오늘·내일(2004).
-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빈곤 가정 아동의 실태 및 지역아동센터 현황과 현안 문제에 대한 정책 제언 (2008).

34) 이런 차원에서 여기서 시도한 조례제정의 전제로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실태조사는 나름대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Korenman, S. Miller, & Sjaasad, J., Long term Poverty and Child Development in the United State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Vol.17 No.2, 1995.

Morgan, K. J, Whose hand rocks the cradle?, The politics of child care, 2001.

Tushman, M. L. &T. J. Scanlan, Characteristics and External Orientations of Boundary Spanning Individual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Vol.24 No.1, 1981.